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의 신고주체 추가 등〉

■ 이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47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의 신고 주체 추가(안 제28조제1항)	2
2.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와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 근거 마련 (안 제29조제7항 신설)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기헌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3. 17.
3. 회 부 일 : 2026.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신고와 사실 조사, 구제조치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의 경우 성희롱·성폭력행위와 달리 신고 주체가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사안이 은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III. 검토의견

1.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의 신고 주체 추가(안 제28조제1항)

개정안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사람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① <u>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u>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① <u>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예술인·예술단체·예술인조합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사람은</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¹⁾를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를 위반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 다. 제9조를 위반한 행위
- 라.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 마.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②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는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 행위,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를 위반한 행위,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를 위반한 행위,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과 관련된 사항,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사항,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① 국가기관등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는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④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예술인조합과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2. 예술인조합의 결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예술인조합에 가입할 것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예술인과 예술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러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는 ① 신고²⁾ → ②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함)의 신고사실 조사 → ③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수사의뢰, 행정처분 등의 구제조치 요청 의결 →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계기관에 대한 구제조치 요청 등으로 이루어짐.³⁾

2)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술인 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한다.

2.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 신고의 접수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①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성폭력(이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라 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 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신고된 경우 보호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의한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고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우선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신고인·피신고인·피해자·관계인 등에게 관련된 사항의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구제조치)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것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수사의뢰

2. 행정처분

3.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그런데, 현행법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피해와 달리 권리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의 신고 주체를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으로만 규정하여,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을 신고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음.

신고 주체를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으로만 규정한 취지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예술계의 자정작용의 일환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⁴⁾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당사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경우 사안이 은폐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미약 상태 등으로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경우는 직접 신고가 어려울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신고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예술인권리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람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구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피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방법 및 그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 등,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공청회 자료집」, 2020. p, 19.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활동권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임.

비록, 모든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형사소송법」이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 수사를 위하여 제3자의 고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⁵⁾을 감안할 때,

일부 행위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⁶⁾하고 있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해당 사실의 발생을 인지한 사람이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5)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②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는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②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는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행위를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인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며,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타 법률⁷⁾에서 제3자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중 불공정행위의 경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직접적인 신고 없이 제3자 신고만으로 조사를 개시할 경우 피해자의 조사 협조를 얻기 어려우며 추가 불이익 우려된다는 점에서, 예술 표현의 자유 위반 관련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해서만 제3자 신고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7)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와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 근거 마련 (안 제29조제7항 신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① ~ ⑥ (생 략) <신 설>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조사절차의 종결 및 위원회 통지, 구제절차의 종결 및 위원회 보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신고된 경우 보호관⁸⁾으로 하여금 지체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예술인보호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없이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고 사실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예술인권리침해행위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인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호관의 조사권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조사
 2.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 ② 보호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보호관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보호관은 제12조에 따른 예술인보호책임자가 된다.
 - ⑥ 보호관의 자격·직무·권한,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 등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 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신고된 경우 보호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의한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고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권조사의 경우에도 신고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종결 사유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신고를 할 수 없거나 제3자에 의한 신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한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스포츠윤리센터도 직권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점¹⁰⁾을 고려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한 문

10)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운영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6.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7.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화체육관광부의 직권조사권 부여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직권조사 권한 신설은 자발적으로 침해사실을 밝히기 어렵거나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침해 사례를 능동적으로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체육분야의 스포츠윤리센터¹¹⁾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직권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 신고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보완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1) (조사인력) 본원 23명(조사실 3명 및 5개 조사팀(1팀당 4명/2인 1조) 20명), 5개 지역사무소(경기·대전·경남·강원·광주) 18명 등 41명('25.3.31. 정원 기준)

이 필요하며,

현재 예술인 신문고 조사인력은 총 5명¹²⁾으로 직권조사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조사대상 건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실질적인 개정 효과 달성을 위해서는 조사관 증원 등을 반영한 사무국 설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예술인보호관이 직권으로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관련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400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20344호) 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84

12) 문체부 예술인권리보호과 조사관 5명(사무관 2, 주무관 3)

참고

예술인 권리침해 사건 통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신고사건 현황 : 총 984건('26.7.31 기준)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924건
- 예술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 60건

⇒ (예술인권리보장법*) 신고사건 984건 중 550건을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치 및 처리 중(434건은 현재 조사중)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예술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

※ 사건처리 단계별: ▲시정명령 165건, ▲분쟁조정 44건, ▲시정권고 10건, ▲조사절차 종결 215건(자진 시정* 96건 포함), ▲구제절차 종결 116건

* 문제부 조사과정 중 피신고인이 이행(예: 미지급금 지급, 계약 변경 등)하여 종결한 경우

(단위: 건, '26.7.31. 기준)

신고 연도	불공정한 계약 강요 (제13조제1호)	수익배분 거부·제한 (제13조제2호)	예술활동 방해·시간섭 (제13조제3호)	장소의 무단 이용·제당 (제13조제4호)	기타 부정한 불이익 변경 (제13조제5호)	예술활동 성희롱·성폭력 (제16조)
2022.9.25.~	10	17	4	-	2	5
2023	10	99	11	3	27	10
2024	3	137	6	4	19	12
2025	19	175	13	4	50	22
2026(~7.31.)	19	138	4	7	52	11
소계	61	566	38	18	150	60
신고 연도	예술의 자유 침해 (제7조)	예술지원사업 차별 (제8조)	예술지원사업 공정성 침해 (제9조)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제14조)	불이익조치 (제38조)	합계
2022.9.25.~	3	1	1	-	-	43
2023	5	2	2	-	-	169
2024	2	2	6	1	2	194
2025	16	6	8	1	2	316
2026(~7.31.)	6	8	12	-	5	262
소계	32	19	29	2	9	984

* 신고유형은 신청인이 신청 당시 선택한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사실조사 과정에서 신고유형 변동 가능